

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. 10. 15.

제 첫 시 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10. 10. 15.

다. 상 정 일 자 : 2010. 10. 26.(제1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환경사업소장)

가. 제안이유

- 분뇨 수집·운반비를 1995년 이후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계속되는 고유가와 장기간 요금인상 억제로 인한 분뇨수집·운반업체의 비용증가에 따라
 - 그 동안의 물가인상 요인을 일부반영 요금을 인상하여 장기간 계류된 요금 인상문제를 해소하고 관내 분뇨처리를 안정되게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
 - 수거식화장실 : 20리터기준 191원 → 240원(ℓ 당 12원, 인상율 25.65%)

부과기준	개정전 수수료			부과기준	개정후 수수료		
	수집· 운반	처리	계		수집· 운반	처리	계
20리터	171원	20원	191원	20리터	240원	0원	240원

-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(ℓ당 15.3원, 인상을 기본요금 27.04%, 초과요금 30.77%)

부과기준	개정전 수수료			→	개정후 수수료			
	수집· 운반	처리	계		수집· 운반	처리	계	
기본요금 (1500리터마다)	16,605원	1,500원	18,105원		기본요금 (1500리터마다)	23,000원	0원	23,000원
초과요금 (100리터마다)	1,070원	100원	1,170원		초과요금 (100리터마다)	1,530원	0원	1,530원

○ 분뇨처리비

- 수거식 화장실 20원 → 0원
-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기본요금 1,500원 → 0원
초과요금 100원 → 0원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홍완식)

- 본 조례 개정안은 장기간 요금 인상 억제와 고유가등으로 분뇨수집·운반 대행 업체의 수자 악화에 따라,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은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인상으로서
 - 수거식 화장실의 경우 20리터 기준으로 현행 191원에서 240원으로 인상 (25.65%)하고
 -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1,500리터 까지는
현행 18,105원에서 23,000원으로 인상 (27.04%)하고
초과요금은 100리터마다 현행 1,170원에서 1,530원으로 인상(30.77%)하며
 - 시 분뇨처리장에서 현행 1 당 1원씩 받는 분뇨 처리비는 없애고자 하는 것임.
-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 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제천시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음.
- 분뇨수집·운반비는 시민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수수료이므로
시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바, 현재 수수료 징수 실태와 분뇨수집·운반 원가 분석 등 인상요인과 인상폭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심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- 또한 조례개정안에서 폐지 하고자 하는 ‘분뇨 처리비’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답변자 : 환경사업소장)

“없음”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